

## 「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」 입법예고에 따른 충청북도의회 의견서

2007년 6월 4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“ 「세종특별자치시  
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”에 대하여  
충청북도의회 제261회(임시회) 제1차 본회의 의결(2007.6.11)을  
거쳐 다음과 같이 제출함.

2007년 6월 11일

충청북도의회 의장

### 1. 도시명칭 ⇒ 세종(世宗)

지난 2006년 전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세종(世宗, Sejong)이라는 명칭은 조선시대 성군인 세종대왕을 의미하는 역사성이 내포되어 있고, 세상(世)의 으뜸(宗)이라고 해석되어 그 뜻이 심오할 뿐만 아니라 발음이 뚜렷하고 영문 표기가 쉬워 국제적으로도 쉽게 불리울 수 있어 행정중심 도시의 명칭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됨.

### 2. 법적 지위 ⇒ 특별자치시

행정수도에 버금가는 위상을 반영하고,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며, 기존 자치단체와 다른 행정체계의

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「특별자치시」의 정부직할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이에 찬성함

**3. 법 시행일 : 2010. 7. 1**

현재까지 행정도시 건설 기본·개발계획 및 광역도시계획 등 각종 계획이 2010년 법 시행을 전제로 수립되었고,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출범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, 2010. 7. 1일자 시행에 찬성.

**4. 관할구역 ⇒ 주민투표를 통해 희망지역에 한하여 편입**

행정도시 주변지역의 경우 도시지형이나 형태보다는 당해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중요하므로 충북도내 청원군 부용면 8개리(27.42km<sup>2</sup>)와 강내면 3개리(6.0km<sup>2</sup>)는 청원군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희망지역에 한해 편입. 끝.